# 보도자료

2011. 12. 19.



# 대 법 원

####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최형표 (🕾 3480-1924)
공	보관실 🕾 3480-1451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1. 12. 19.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교통, 폭력,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 심의

#### 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u>장애인 대상 성범죄</u>" 유형을 신설하고, 비장애인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한 양형기준 의결

비장애인				장애인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2년	1년6월-3년	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 - 7년	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 ②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이미 2010. 6. 29.(2010. 7. 15. 시행)자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 준을 대폭 상향한 바 있으나, 이번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더욱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형량범위 상향 조정
- 특히, 성범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에도 형량범위 상향 조정

####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후 형량범위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유형 기본 가중 유형 가중 감경 감경 기본 의제강제추 1년-3년 3년 -6년 의제강제추행 - 10월 2년-4년 8월-2년 1년6월-3년 행/의제강간 |1년6월-3년|2년6월-5년| 4년-6년 의제강간 강제추행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강제추행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강제유시성교 4년-7년 5년-8년 7년-10년 |강제유사성교| 4년-7년 6년-9년 8년-12년 강간 6년-9년 7년-10년 9년-13년 강간 6년-9년 8년-12년 11년-15년

#### ③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형 권고사유 신설

- 성범죄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u>국민의 법감정과 법조인의 법의식에</u>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실형 권고사유 신설
- 실형 권고사유
  - ①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 ②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 ③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④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④ 교통, 폭력,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 양형기준 초안이 대부분 마련되었고, 미해결 쟁점에 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여 대부분 결론을 내림
- 다만 증권·금융 범죄를 중심으로 일부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추가 연구와 소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남은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 논의하여 결론을 내릴 예정
-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2. 1. 30.(월) 16:00 개최 예정

#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 종전에는 일반적 성범죄를 ①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②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③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구분하여 양형기준 설정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 여 비장애인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여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 비장애인과 장애인 형량범위 비교

비장애인				장애인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2년	1년6월-3년	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 - 7년	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 ②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이미 2010. 6. 29.(2010. 7. 15. 시행)자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바 있으나, 이번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더욱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다시 형량범위 상향
- 종전에는 '의제강제추행'과 '의제강간'(13세 미만 아동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위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동일한 형량범 위를 제시하였나, 양자는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 으므로 형량범위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수정

####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후 형량범위 비교

#### ◈ 일반적 성범죄

수정 전				수정 후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의제강제추 행/의제강간	1년-3년	2년-4년	3년-6년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2년	1년6월-3년
				의제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강제추행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강제추행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강제유시성교	4년-7년	5년-8년	7년-10년	강제유시성교	4년-7년	6년-9년	8년-12년
강간	6년-9년	7년-10년	9년-13년	강간	6년-9년	8년-12년	11년-15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정 전				수정 후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의제강제추 행/의제강간	2년6월-4년	3년-6년	4년-8년	의제강제추행	2년6월-3년6 월	3년-5년6월	5년-8년	
				의제강간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강제추행	3년-6년	5년-8년	7년-10년	강제추행	5년-8년	7년-11년	10년-14년	
강제유시성교	5년-8년	7년-10년	8년-12년	강제유시성교	5년-9년	8년-12년	11년-15년	
강간	7년-10년	9년-13년	11년 이상, 무기	강간	6년-10년	9년-14년	13년 이상, 무기	

# ③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의 형량범위 상향

● <u>13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성범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u> 발생한 중대 범죄에 관하여 형량범위 상향 조정

#### ※ 양형기준 수정 전·후 형량범위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1년6월-4년	2년-5년	3년-6년	일반강제추행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일반강간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일반강간/주				친족관계 강제추행	3년6월-6년	5년-8년	7년-10년
강제주행/특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친 <del>족</del> 관계 강간	4년-7년	6년-9년	8년-12년
수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 수강제추행	5년-8년	7년-11년	10년-14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 간	5년-8년	6년-9년	7년-11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 간	6년-9년	8년-13년	12년-16년

# ④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형 권고사유 신설

-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집행유예를 긍정하는 요소와 부정하는 요소의 개수를 비교하여 그 개수 차이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채택
- 실형 권고사유
  - ①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 ②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 ③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④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5 성범죄 양형인자 수정

#### 1.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신이 보호·감독·진료하고 있는 <u>19</u> 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u>장애인(연령 불문)</u>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결

#### ● 적용범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예컨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 이집, 학원 또는 교습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2.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의 요건 엄격화

-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고,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법인에 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양형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을 특별감경인자로 존치하기로 의결
- 다만,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왜곡되는 부당한 합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불원 요 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의결
  - ⇒ ① <u>진지한 반성 및 합의를 위한 노력(</u>가해자 태도 요소), ② <u>처벌불원</u> 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

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피해자 의사 요소), ③ 합의의 상 당성에 대한 확인(합의의 상당성 요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의 요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6 향후 일정

- 2011. 12. 20. ~ 2012. 1. 20.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2012. 1. 중순 : 양형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반영
- 2012. 1. 30. : 위원회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 결·확정
- 2012. 3. 16.경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시행

# □. 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 1 논의 경과

#### 1.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범죄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미해결 쟁점은 대부분 해결됨 ⇒ 구체적 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중 참작사유 등에 대한마무리 작업 실시 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양형기준안 의결하기로 함

#### 2. 증권·금융범죄

- 종전의 '금융·경제범죄'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 이므로 '증권·금융범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결
- <u>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 유형</u>에 관해서는 기존 법원 양형실무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하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추가적인 연구와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 위원회 제39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함

# 2 **향후 일정**

- 2012. 1. 30. : 위원회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 의결
- 2012. 2. 중순 :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12. 3. ~ 4.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 시행
- 2012. 5.경 : 교통, 폭력,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